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 ○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3조)
 -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 • 범죄취약지역 협의회 합동 순찰 지원
 •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교육
 •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캠페인
 - 범죄 취약 계층 지원 사업
 • 아동, 청소년, 다문화가정 등 고충상담 및 간담회 개최
 • 아동 청소년, 다문화가정 등 견학
 -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

3. 참고사항
 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9조, 청소년기본법 제8조,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
 ○ 예산조치 : 3,800천원
 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5. 28. ~ 6. 17.)
 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.
 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 ○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6.12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○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

- 범죄취약지역 협의회 합동 순찰 지원
-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교육
-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캠페인

○ 범죄 취약 계층 지원 사업

- 아동, 청소년, 다문화가정 등 고충상담 및 간담회 개최
- 아동 청소년, 다문화가정 등 견학

○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

제13조제2항 중 “보조금지원”을 “그 밖에 보조금지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보조금 등 지원)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3조(보조금 등 지원) ①----------있으며, 그 대상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.
<신 설>	1.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가. 범죄취약지역 협의회 합동 순찰 지원 나.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교육 다. 4대 사회악 근절 예방 캠페인
<신 설>	2. 범죄 취약 계층 지원 사업 가. 아동, 청소년, 다문화가정 등 고충 상담 및 간담회 개최 나. 아동 청소년, 다문화가정 등 견학
<신 설>	3.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
②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	② 그 밖에 보조금지원----------.